



세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조세재정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의 주요 기능은 납세자들이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 및 지방 조세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뉴욕주는 세법(Tax Law) 41조에 납세자 권리장전(Taxpayers' Bill of Rights)을 수립했습니다. 조세부는 다음을 통해 납세자들을 지원합니다.

- 납세자의 권리 및 감사에 관한 조세부의 의무를 설명하는 비전문적 설명 제공
- 납세자들이 조세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청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 제공
- 조세부가 납세 채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절차(이른바 징수 과정) 제공

아래 참조된 모든 간행물을 포함해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조세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조세부에 전화하시면 됩니다(본 간행물 마지막 부분에서 도움/필요하십니까? 참조).

본 간행물은 세무 행정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뉴욕주 세무 감사

조세부는 납세자들이 정확한 세액을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뉴욕주 세법에 따르면, 감사 기간 동안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상의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 대상 신고서의 유형에 따라 납세자의 소득, 영수증, 비용, 신용 및 기타 사업 기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문 감사 기준

일반 회계 원칙과 감사 기법에 정통한 조세부 감사관이 전문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관은 납세자, 납세자의 가족 또는 납세자의 종업원(사업체 감사의 경우)과 사적인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감사관은 감사 대상인 사업체에 어떠한 사적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는 공정하고, 정중하며 전문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 과정 동안 언제라도 이 기준이나 납세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되면, 즉시 감사관의 감독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려면 조세부의 내무국(Office of Internal Affairs)에 518-451-1566번으로 전화하거나, 아래 주소에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NYS TAX DEPARTMENT
OFFICE OF INTERNAL AFFAIRS
W A HARRIMAN CAMPUS
ALBANY NY 12227-0811**

우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Publication 55, 지정 민간 우송 서비스(Designated Private Delivery 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감사 기간 동안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는 감사관과 협력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합리한 요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
- 감사 기간 동안 납세자의 사업이나 사생활의 차질 최소화
- 독단적 조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

공소시효

뉴욕주 세법은 추가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조세부의 권리에 3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세금 신고 후 3년). 그러나 부정합한 조세 회피 거래가 있을 경우, 또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에서 소득을 25%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추가 세액 징수에 6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납세자와 조세부는 공소시효의 만료 전에 서면 동의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납세자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연방 세금 신고서 변경(연방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조세 회피 의도로 거짓 혹은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 징수에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소득세, 상속세 및 법인세 목적으로, 최종적인 변경, 수정, 재협상 또는 기각 결정 후 일반적으로 90일 내에 연방 변경을 뉴욕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이후에 제출된 수정 신고서의 경우, 추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세부의 권리에 대한 공소시효는, 수정 신고서의 변경 또는 수정에 기인하는 경우, 그러한 수정 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더 긴 기간이 적용되거나, 수정 신고서가 연방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납세자는 조세부의 특정 정보 요청 이유와 해당 정보의 사용 방법 및 해당 정보의 미제출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조세부가 세금 신고서나 감사 중에 얻은 정보를 비인가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된 비밀유지 및 상호주의 기준 내에서 조세부가 납세자의 세금 정보를 IRS 및 기타 정부 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감사 시 대의권

납세자는 감사 기간 동안에 스스로를 대리하거나, 다른 사람을 동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납세 대리인은 납세자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서면 승인서(양식 POA-1, 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납세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제출 방법은 조세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조세부에 전화하십시오(도움/필요하십니까? 참조). 납세자는 감사 기간 동안 언제든지 대의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대의권을 확보할 때까지 회의나 면담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재정부의 전직 직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조세재정부를 상대로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일부 제약에 따라, 전직 직원은 이 2년 동안 독립적인 조세 이의 분과(Division of Tax Appeals)를 상대로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전직 직원은 재직 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안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이 영구히 금지됩니다.

음성 녹음

납세자가 조세부에 사전 서면 고지를 제공할 경우, 대면 면담을 음성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비로 자가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세부는 납세자에 대한 사전 서면 고지를 통해 대면 면담을 녹음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이 녹음을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비용을 조세부에 지불하는 경우에 한해, 조세부는 녹취록이나 사본을 납세자에게 제공합니다.

현장 감사

현장 감사 시에는 납세자가 요구받은 기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15일 전에 일정을 잡습니다. 감사관이 최초 약속을 정하기 위해 현장 감사 대상 납세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납세자는 약속 일정의 확정 및 제공해야 할 장부와 기록을 설명한 서신을 받게 됩니다. 사업체 감사의 경우, 납세자가 사업 활동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 납세자의 사업체에서 이뤄집니다. 필요한 기록 수집에 15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는 통상적으로 최대 30일까지 연장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0일을 초과하는 지연이 있을 경우, 납세자는 추가 시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시 회의

납세자와의 최초 회의(개시 회의) 시에, 감사관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감사의 접근방법 및 절차 설명
- 감사 과정 설명
- 납세자가 감사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의할 권리 및 이의 제기 절차 설명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이 회의를 이용해 문의하십시오.

감사 방식

조세부는 감사를 실시할 때 몇 가지 감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세 감사
- 시범 기간 방식을 차용한 감사
- 통계적 표본 추출 방식을 차용한 감사

감사관의 방식 선택은 세금 유형, 기록의 정확성 및 가용성, 사업체의 규모와 복잡성 같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감사의 범위가 확장되어 복수 세금 감사가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가 다른 세금의 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러한 조사 결과는 감사 과정 동안 언제든지 다른 세무 전문 기관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의 사실과 정황에 따라, 한 세무 전문 기관의 감사 조정이 다른 기관의 세금 재산출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판매세 및 보상 사용세의 경우, 조세부가 요청한 기록을 납세자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납세자가 제공한 기록이 조세부의 세금 결정에 불충분한 경우, 조세부는 추가 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 기간 및 소요 기간

감사는 일반적으로 3년 기간을 다루며,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감사 대상 신고서의 복잡성 및 납세자 기록의 시의적절한 가용성, 완전성 및 정확성에 따라 다릅니다.

현장 감사 결과

조세부가 변경이 필요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신고서, 환급 요청 또는 문서에 변경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납세자에게 발송합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 감사관은 감사 조서의 사본을 제시하고, 감사 결과 및 감사 기간 동안 사용한 감사 방식과 절차를 쉽고 비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합니다. 결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 기간 동안 발견된 회계 오류를 시정하도록 기록 관리 관행에 대한 권장 변경 사항
-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세법의 적절한 해석 설명
- 추가 세액에 대한 고지
- 환급액에 대한 고지

조세부는 감사 결과를 검토할 합리적인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납세자가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감사관은 이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입니다.

감사가 환급으로 귀결되면, 감사관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동의하는 경우

납세자가 감사 결과에 동의한 경우, 납세자는 제안된 감사 변경 진술서(Statement of Proposed Audit Changes), 또는 유사한 문서에 서명한 후 납부해야 할 세액 전액과 함께 감사관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납세자에게 납부할 세액이 있으나 전액을 즉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할부 납부 약정(Installment Payment Agreement)을 맺고 정해진 기간 동안 세액을 나눠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할부 납부 약정 참조). 그러나 미납 잔액에 대한 이자(및 벌금도 가능)가 계속 누적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안된 감사 변경 진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후 감사관에게 보내십시오. 필요할 경우, 납세자는 감사관의 감독관과 추가 회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납세자가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추정세 통지서(Notice of Deficiency) 또는 결정 통지서(Notice of Determination)가 발송됩니다. 이 시점에서 납세자는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Bureau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 Services) 또는 조세 이의 분과를 통해 감사 결과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조세부의 조치에 대한 납세자의 항의 권리 참조). 해당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받은 통지서를 참조하십시오. 이전에 조세부에 서면으로 제안서의 입장에 반대했더라도 반드시 서면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정세 통지서 또는 결정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에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책임으로 판명될 경우, 내야 할 추가 이자 및 모든 벌금의 누적을 막기 위해 제안 세액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는 또한 모든 세액을 납부한 후 관련된 세금에 해당되는 기한 내에 환급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세부가 이 청구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되는 법정 기간 내에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 또는 조세 이의 분과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감사

서면 감사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 환급 요청서 또는 기타 문서를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때로 서면 감사는 IRS와 같은 다른 출처에서 확보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이를 근거로 합니다. 여기에는 조세부의 판단으로 납세자가 제출했어야 할 세금 신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또는 납세자에게 추가 세액이나 환급 받을 금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납세자는 서면 감사가 진행 중임을 통보받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조세부는 납세자에게 서면 감사에 대해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합니다. 조세부는 납세자에게 요청에 응답할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합니다. 납세자가 응답하면, 조세부는 납세자의 답변을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서면 감사 결과

조세부가 변경이 필요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신고서, 환급 요청 또는 문서에 변경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납세자에게 발송합니다.

납부해야 할 추가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제안된 감사 변경 진술서* 또는 사유를 설명하는 유사한 문서를 받게 됩니다. 조세부는 납세자에게 이에 응답할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합니다. 실무자가 납세자의 답변을 분석한 후, 적절한 경우 납부할 금액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환급인 경우, 조세부에 납부할 다른 세금이나 채무가 없는 납세자에게는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신과 함께 환급액이 발송됩니다(상계 참조).

예비 조사 결과가 다른 세금의 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러한 조사 결과는 감사 과정 동안 언제든지 다른 세금 전문 기관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의 사실과 정황에 따라, 한 세무 전문 기관의 감사 조정이 다른 기관의 세금 재산출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는 경우

납세자가 감사 결과에 동의한 경우, 조세부는 납세자에게 *제안된 감사 변경 진술서*, 또는 유사한 문서에 서명하고 세액을 납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있으나 잔액을 즉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할부 납부 약정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세액을 나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할부 납부 약정 참조). 그러나 미납 잔액에 대해 이자(및 벌금도 가능)가 계속 누적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입증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고, *제안된 감사 변경 진술서* 사본을 조세부에 회신하셔야 합니다. 실무자가 제출된 납세자의 추가 정보를 분석하고, 적절한 경우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납세자가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추징세 통지서(Notice of Deficiency)* 또는 *결정 통지서(Notice of Determination)*가 발송됩니다. 이 시점에서 납세자는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 또는 조세 이의 분과를 통해 감사 결과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조세부의 조치에 대한 납세자의 항의 권리 참조). 해당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받은 통지서를 참조하십시오.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조세부의 *제안된 감사 변경 진술서*의 입장에 반대했다라도 반드시 서면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징세 통지서 또는 *결정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에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책임으로 판명될 경우 내야 할 추가 이자 및 모든 벌금의 누적을 막기 위해 제안 세액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는 또한 모든 세액을 납부한 후 관련된 세금의 해당 기한 내에 환급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세부가 이 청구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되는 법정 기간 내에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 또는 조세 이의 분과를 통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

어떤 유형의 세금에서도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원천징수액이나 추정 세액, 또는 환급 대상 세금 공제액을 초과 납부하여 소득세를 환급받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연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환급을 청구합니다. 조세부는 접수된 신고서의 최초 처리 과정 중에 이러한 환급을 지급합니다.

납세자는 원래의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금 공제, 소득 공제 또는 면제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세금 유형의 경우, 환급을 청구하려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금 유형의 경우에는 환급 청구서와 함께 오류에 의한 세금 납부나 초과 납부를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조세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조세부는 감사, 평가, 징수 또는 집행 절차 과정 동안 납세자의 세금 초과 납부를 알게 되면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공소시효로 인해 해당 기간이 끝난 경우, 조세부는 초과 납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환급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공제를 승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부가 명시된 기간 내에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을 경우, 조세부는 납세자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세부가 납세자의 신고서 제출 기한이나 신고서 제출일 중 나중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세부는 납세자의 개인 소득세 환급액에 이자를 추가해야 합니다.

조세부는 요청한 환급액에 대한 청구를 승인하거나, 조정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승인하는 경우, 납세자는 환급과 함께 해당되는 이자를 더해 수령하시게 됩니다. 조정된 경우, 납세자는 요청한 것보다 적은 금액과 이에 대한 설명서를 받습니다. 납세자의 청구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조세부는 납세자의 항의 권리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합니다.

유의 사항: 납세자에게 조세부나 다른 주 기관, 연방 정부, 뉴욕시 또는 다른 주에 내야 할 다른 세금이나 채무가 있는 경우, 조세부는 납세자에 대한 환급 전액이나 일부를 해당 기관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급액 상계*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립니다. 조세부에 대한 채무가 아닌 다른 기관과 관련된 채무에 대한 질문은 해당 기관, 연방 정부, 뉴욕시 또는 다른 주에 직접 연락하십시오(상계 참조).

환급의 조정이나 기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본인의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한 환급을 조정 또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기각 통지서(Notice of Disallowance)*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통지서에 나와 있는 기간 내에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과의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또는 조세 이의 분과에 청원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납세자의 항의 권리 참조).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조세부와와의 추가 서신 교환이나 연락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적시에 환급 청구를 제출한 후 6개월이 경과하였고 이전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득 및 법인세 추징세에 청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심리 청원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조세부가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우, 조세부가 **기각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납세자는 요청이나 청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른 세금의 경우,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심리를 청원하는 데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세부가 판매세 환급 청구를 거부할 경우, 납세자는 청구를 거부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요청이나 청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급 청구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의 경우, 납세자는 원래 신고서 제출 기한 또는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 중 나중 날짜까지 수정 신고서나 기타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청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납세자가 3년 기간 이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판매세 신고서에 대한 수정 신고서 또는 환급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되는 환급액은 환급 청구 제출 직전 3년 기간 이내 그리고 신고서 제출 시 연장된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더한 기간에 납부한 세금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2년 내에 수정 신고서나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되는 환급액은 환급 청구 직전 2년 기간 내에 납부한 세금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위에 언급된 기간을 초과해 소득세, 유산세 또는 법인세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환급 청구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환급이 납세자가 뉴욕주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한 연방 변경 또는 수정 사항에 기인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납세자는 그러한 변경 또는 수정의 통지 기한일로부터 2년 내에 수정 신고서나 환급 청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납세자가 사용해야 하는 환급 청구 양식, 신고서 또는 기타 방식은 환급을 받으려는 세금에 따라 다릅니다. 환급 청구에 관한 시간 제한 정보 및 적절한 양식을 찾아 보려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벌금 및 이자

벌금을 물게 되는 가장 흔한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후 신고
- 세금 체납
- 추정 세금 미납

간단히 말하자면, 벌금과 이자를 피하려면 세금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세자의 세금 책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본 간행물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이용해 신고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기한 후 신고 및 세금 체납에 대한 벌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체납 세액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기한 후에 신고할 경우, 다양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조세부에 전액이 납부될 때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이자와 벌금이 계속 누적됩니다. 모든 이자는 일일 복리로 계산됩니다. 해당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조세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

조세부의 조치에 대한 납세자의 항의 권리

조세부가 취한 최종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에 양식 CMS-1, **조정 회의 요청서**

(*Request for Conciliation Conference*)를 제출하거나, 또는 조세 이의 분과에 세금 이의 심리를 요청하는 양식 TA-100,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해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됩니다.

- 추징세 또는 결정의 발행
- 환급 청구의 거부
- 면허, 등록 또는 면제 증서의 거부 또는 취소

조세부가 조치에 관한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납세자는 요청 또는 청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받은 통지서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시간 제한은 세법에 정해지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요청이나 청원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 **배달 증명(Certified)** 또는 **등기(Registered)** 우편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규칙의 목적상, 제출일은 요청이나 청원이 들어 있는 봉투에 미국 우편 서비스(U.S. Postal Service)의 소인이 찍힌 날짜, 또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7502항에 명시된 대로 지정 민간 우송 서비스에서 기록 또는 표시한 날짜를 말합니다. Publication 55, **지정 민간 우송 서비스**에 이 목적으로 승인된 민간 우송 서비스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출석해 본인을 대리하거나, 또는 승인 받은 대리인이 해당 납세 심리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대리인은 납세자의 위임장을 지참해야만 납세자를 대리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제출 방법은 조세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특정 금액 한도 이내인 경우, 납세자는 소액청구과(Small Claims Unit)에서 조세 이의 분과 심리를 열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소액 청구 옵션** 참조). **유의 사항:** 유산세 신고자는 조세 이의 분과 심리를 열 자격이 없습니다. **유산세 이의 제기 권리**를 참조하십시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는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이나 조세 이의 분과에서의 선납 심리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 신고서상 계산 또는 사무 오류
- 연방 신고서에 대한 IRS의 변경 사항
- 신고서상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 미납

조정 회의

조정 회의는 항의건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회의는 조정 위원에 의한 비공식적인 절차이며, 조정 위원은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제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조정 회의 후, 납세자에게 동의서 형식으로 제안된 해결안이 발송됩니다. 납세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조정 명령(Conciliation Order)이 발부됩니다. 납세자가 조세 이의 분과에 청원 양식 TA-100을 제출하지 **않는 한**, 조정 명령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해당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명령서에 동봉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유통업체, 수입 운송업체, 터미널 운영업체 또는 석유 사업체의 채권이나 기타 유가 증권액의 증가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 회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조세 이의 분과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조정 회의를 요청하려면, 조세부의 온라인 서비스 계정을 통해(받은 통지서에 있는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계정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면 조세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OLS**를 검색해 계정을 만드십시오), 또는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에 518-435-

8554번으로 양식 CMS-1-MN을 팩스로 발송하거나, 아래 주소에 우편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NYS TAX DEPARTMENT
CONCILIATION & MEDIATION SERVICES
W A HARRIMAN CAMPUS
ALBANY NY 12227-0918**

우편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 Publication 55, *지정 민간 우송 서비스(Designated Private Delivery 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조세 이의 심리

조세 이의 심리를 요청하려면 조세 이의 분과에 양식 TA-100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원은 서면이어야 하며, 어떤 조치에 항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심리는 공정 행정법 판사의 주재로 열리는 반박 절차입니다. 심리는 속기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심리 후, 납세자 또는 조세부가 조세 이의 위원회(Tax Appeals Tribunal)에 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리를 요청하지 않는 한, 행정법 판사가 분쟁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재심리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심리 기록 및 추가 구두 또는 서면 주장 검토, 및
- 행정법 판사의 결정을 용인, 파기 또는 수정하는 결정을 내림, 또는
- 추가 심리를 위해 사안을 행정법 판사에게 환송

양식 TA-100 및 *규범 및 절차 규칙(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은 조세 이의 분과 및 조세 이의 위원회 웹사이트 www.dta.ny.gov에서 제공됩니다. 518-266-3000번으로 전화하거나, 아래 주소에 서면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DIVISION OF TAX APPEALS
AGENCY BUILDING 1
EMPIRE STATE PLAZA
ALBANY NY 12223**

청원 양식 및 규칙에 대한 요청은 시간 제한의 목적상 심리 청원 제출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청원 접수에 대한 시간 제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심사

조세 이의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법원 심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사 요청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조세 이의 위원회가 배달 증명 우편 또는 개인 송달로 결정 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일부 세금의 경우, 납세자는 법원 심사를 요청할 때 해당 세금, 이자 및 벌금에 법원 비용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이러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탁하셔야 합니다.

소액 청구 옵션

분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규범 및 절차 규칙*에서 정한 달러 한도 이내일 경우, 납세자는 조세 이의 분과의 소액청구과에서 심리를 열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 주재 사무관이 소액 청구 심리를 실시합니다. 주재 사무관의 결정으로 케이스는 종결되며, 이 결정은 조세 이의 분과 내 다른 과, 조세 이의 위원회 또는 주 내 다른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무고 배우자의 책임 면제

부부 합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양측에게 신고서에 따른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자 또는 벌금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한쪽 배우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배우자가 이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합산 신고서상 세금 책임으로부터 면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소득을 누락하거나, 허위 소득 공제나 세금 공제를 청구했기 때문에 세금 축소가 발생한 경우
-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거나, 또는 더 이상 동거하지 않는 경우
-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배우자가 해당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할 경우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Publication 89, *무고 배우자 구제(및 책임의 분리와 형평적 구제)(Innocent Spouse Relief (and Separation of Liability and Equitable Relief))*
- 양식 IT-285, *무고 배우자 구제(및 책임의 분리와 형평적 구제)(Request for Innocent Spouse Relief (and Separation of Liability and Equitable Relief))* 요청 및 그 지침

유산세 이의 제기 권리

추정세 통지서 또는 유산세 환급 청구 거부에 항의하려면,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에 양식 CMS-1-MN을 제출하거나 (*조세부의 조치에 대한 납세자의 항의 권리* 참조), 또는 유언 검인 법원(Surrogate's Court)에 특별 절차를 개시하는 청원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를 진행하고 싶지만 양식 CMS-1-MN을 제출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또는 조정 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해당 유산에 대한 관할 카운티의 유언 검인 법원에 *청원 통지서(Notice of Petition)* 및 *청원 확인서(Verified Petition)*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원은 서면이어야 하며, 어떤 조치에 항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에 부합하게 청원서를 작성한 후 수령한 추정세 통지서, 기각 통지서 또는 조정 명령에 표시된 날짜까지 제출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청원 양식을 구하려면, 유산의 관할 현지 유언 검인 법원의 서기에게 연락하십시오. 청원 양식 및 규칙에 대한 요청은 심리 청원 제출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청원 접수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유언 검인 법원에 *청원 통지서* 및 *청원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본을 조세재정부 국장(Commissioner of Taxation and Finance)에게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곳:

**NYS TAX DEPARTMENT
OFFICE OF COUNSEL
W A HARRIMAN CAMPUS
ALBANY NY 12227-0911**

우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Publication 55, *지정 민간 우송 서비스(Designated Private Delivery 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징수 과정

납세자의 이의 제기 권리가 만료되었거나 이를 소진한 경우, 조세부의 민사 집행 분과(Civil Enforcement Division)에서 징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에게는 세금 채무를 납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정 상황에서 납세자는 할부 납부 약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처한 납세자는 절충안(Offer In Compromise)을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부가

이를 반드시 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납세자의 제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 최근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 지급 불능인 경우(채무가 자산을 초과)
- 전액을 징수하면, 합리적인 생계비를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절충된 금액은 합리적인 징수 가능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절충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Publication 220, *절충안 프로그램(Offer in Compromise Program)*을 참조하십시오.

할부 납부 약정

경제적으로 채무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는 할부 납부 약정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조세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 납세자는 이 약정에 따라 세금 채무 전액을 월별 할부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금융기관과 직접 납부 약정을 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월별 할부 납부금이 자동으로 인출되어 조세부의 처리 은행으로 송금됩니다.

그러나 이는 납부해야 할 총 금액에 한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세금 채무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미납 잔액에 대해 이자와 벌금이 계속 누적됩니다.

할부 납부 약정 자격이 되려면, 양식 DTF-5,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Condition)*를 작성하고 납세자의 현재 재무 상태와 전액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모든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새 세금 채무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정에 따라 체납 상태가 됩니다. 조세부가 납세자에게 체납 통지서를 제공한 후, 약정에 따라 해당 채무에 대한 징수 조치를 재개하거나, 또는 해당 약정을 조정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부는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일체 지불금, 환급금 또는 기타 금전을 할부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 채무에 적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된 일체 금전은 납세자의 할부 납부 약정의 상환 조건을 경감시키지만, 납세자는 여전히 채무를 전액 납부할 때까지 약정에 따른 월별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상ge 참조](#)).

세금 징수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부는 통보 없이 언제든지 할부 납부 약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조세부가 최소 30일 전에 사유를 설명하는 통지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할부 납부 약정이 조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약정 체결 전에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안정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경우
- 납세자의 재정 상태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 납세자가 기한까지 할부 납부금이나 기타 세금 채무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 납세자가 향후 세금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요청 시 납세자가 본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갱신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을 종료하게 되면, 조세부는 이후 채무에 대한 징수 조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납부 약정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부는 납세자의 차후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카운티 서기 및 뉴욕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세금 영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세금 영장 참조](#)).

납세자가 세금 채무 전액을 해결하지 않거나, 할부 납부 약정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조세부가 절충안을 철회 또는 거부하는 경우, 조세부는 납세자의 세금 채무액을 징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체 혹은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금 영장

조세부는 납세자를 상대로 세금 영장(Tax Warrant)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영장*은 납세자에 대한 민사 판결에 상응하는 조치입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뉴욕주 카운티 서기 사무실 및 뉴욕주 국무부에 보관되는 공문서입니다. 영장 정보는 국무부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발부된 세금 영장은 납세자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해 선취특권을 형성해 납세자의 신용 획득 또는 재산의 매수나 매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세부는 납세자의 부동산 및 동산을 압류 및 매각하거나, 임금 및 기타 소득을 차압할 수 있습니다.

압류

*압류(Levy)*는 납세자 재산의 법적 압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세부는 압류를 집행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양식 DTF-978, *판결 확정 채무자에 대한 통지서(Notice to Judgment Debtor or Obligor)*를 발송해 징수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재산 목록을 제공합니다.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가 가장 흔하며, 이 경우 은행은 납세자의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해 조세부에 송금합니다. 대출금이나 임대료 등 제3자가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도 압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 납세자의 경우, 보유 현금이나 기계 및 장비 같은 사업체 자산에 압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집행

*소득 집행(Income execution)*은 납세자의 임금에 행해지는 압류의 한 유형입니다. 납세자가 임금을 받을 때마다 총임금의 최대 10%까지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세부는 납세자의 고용주로 하여금 납세자의 급여에서 총임금의 최대 10%까지 자동으로 차감해 이를 조세부에 송금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납 세금 채무가 해결될 때까지 소득 집행 효력이 유지됩니다.

압수 및 매각

조세부는 면제 대상이 아닌 납세자의 부동산 및 동산을 압수해 경매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압수 시, 징수 대행업체가 납세자의 사업체 잠금 장치를 바꿔 납세자의 사업체 장소 및 사업체 자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납세자 사업체의 모든 상품을 없애거나, 또는 사업체 자산을 압수해 경매로 매각할 때까지 다른 곳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의 재산을 압수할 경우, 조세부는 경매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벌금 및 이자와 함께 압수 및 경매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전액 납부하거나, 만족할 만한 납부 합의에 이를 경우, 조세부는 해당 재산의 압수를 해지하고 납세자에게 반환합니다.

납세자는 요청 후 60일 이내, 또는 보다 긴 명시된 기간 이내에 압수된 재산을 매각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긴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주에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조세부는 납세자의 요청을 받아드릴 것이며, 그런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사실을 통지할 것입니다.

조세부는 뉴욕 민사 실무법 및 규칙(New York Civil Practice Law and Rules)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합니다.

납세자의 자산이 매각되면, 조세부는 납세자에게 경매 수익의 지출 회계 처리를 발송합니다. 경매 수익이 납세자의 채무와 조세부의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부는 해당 초과 금액을 납세자에게 상환합니다.

압류 해지

조세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하고, 납세자에게 해지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납세자가 파산 청원을 신청한 경우
- 납세자가 기저 채무를 납부하거나, 시간의 경과로 인해 채무에 대해 집행 불가 상태가 된 경우
- 압류를 해지하는 것이 채무의 징수를 촉진하는 경우
- 납세자가 압류 해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할부 납부 약정을 체결한 경우
- 압수된 재산의 공정 시장가액이 납세자의 세금 채무를 초과하고, 납세자의 채무 징수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고 재산의 일부 해지가 가능한 경우
- 개인 납세자의 경우, 압류가 납세자의 재무 상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의 거래나 사업에 필수적인 재산을 압수하는 경우, 조세부는 상기에 명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그러한 재산의 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납세자의 재산에 설정된 압류를 해지하더라도, 납세자의 세금 채무 징수에 필요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조세부의 향후 압류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잘못 압류된 경우, 조세부는 압수된 재산이나 공정 시장가액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압수된 금액 및 이자(해당되는 경우)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계

납세자가 주 기관 또는 대행기관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했고, 주 기관이 이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경우, 해당 비용 지급이 보류되고 납세자의 세금 채무 공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지불금이 이러한 종류의 상계에 적용될 경우, 조세부는 사전 서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또한 특정 상황 하에서, 납세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뉴욕주 세금 환급금 또는 기타 지불금이 있는 경우, 이는 뉴욕주 세금 채무를 상계하는 데 사용되거나, 또는 납세자가 금전이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다른 주 기관, 연방 정부, 뉴욕시 또는 다른 주에 송금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주 기관, 연방 정부, 뉴욕시 또는 다른 주는 납세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후 납세자의 채무에 환급금을 적용합니다.

납세자에게 연체되고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뉴욕주, 뉴욕시 또는 옹커스 소득세 채무가 있는 경우, 이는 연방 정부 또는 복수 주 상계 프로그램(Multi-State Offset Program) 가입 주에 회부됩니다. 납세자의 연방 소득세 환급금 또는 기타 주 환급금은 뉴욕주 세금 채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납부해야 할 금액까지).

의무가 없는 배우자의 환급

부부 합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받기를 기대하는 납세자의 경우, 조세부는 해당 환급금을 배우자의 세금 채무나 뉴욕주 기관에 대한 기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몫의 환급액이 배우자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양식 IT-280, *의무가 없는 배우자 할당(Nonobligated Spouse Allocation)*을 작성한 후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 해당 양식을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
- 환급금을 다른 채무를 상계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조세부의 통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양식을 제출.

양식 IT-280으로는 배우자의 연방 정부에 대한 채무나 다른 주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 채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금 미납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는 최소 \$10,000의 체납 확정 및 최종 뉴욕주 세금 채무가 있는 납세자의 뉴욕주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기 전에, 조세부는 60일 이내에 채무를 전액 납부하거나, 만족할 만한 납부 합의를 체결하거나,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면허 정지에 항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 통지서에 이름이 명시된 해당 납세자가 아닌 경우.
- 체납 세금 채무를 전액 납부한 경우.
- 문제의 체납 세금 채무, 또는 체납된 자녀 양육비 또는 자녀와 배우자 생활비 체납액의 변제를 위해 납세자의 임금이 차압되고 있는 경우.
- 납세자의 운전면허가 상업용 운전면허인 경우.
- 납세자가 공공 지원이나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
-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납세자가 증명하는 경우.
- 납세자가 12개월 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 약정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조세부가 잘못 판단한 경우.

또한 본인이 무고 배우자 구제 자격이 있거나(Publication 89, *무고 배우자 구제(및 책임의 분리와 형평적 구제)* 참조), 또는 파산 청원 제출에 의해 기저 채무의 집행을 유예되었음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하실 수도 있습니다(조세부의 파산과(Bankruptcy Unit)에 518-457-3160번으로 전화).

납세자가 통지서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조세부는 운전면허 정지를 위해 DMV에 납세자의 케이스를 회부하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실제로 정지되기 전에, DMV는 납세자에게 조세부에 대한 세금 채무 해결에 15일이 남아있다는 내용의 최종 서한을 발송합니다. 제한적인 용도의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정보는 DMV 웹사이트 www.dmv.ny.gov를 방문하십시오.

책임자 사정

판매세 및 사용세, 원천세 및 자동차 연료 소비세와 같은 세금의 경우, 사업체의 책임자가 사업체의 뉴욕주 미납 세금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해산된 법인의 중역, 이사 또는 직원, 또는 합명회사 또는 개인회사의 직원으로 해당 사업체를 대리해 세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책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에 대한 책임의 경우, 해당 책임자가 고의적으로 해당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세부가 책임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능동적으로 해당 사업체의 운영에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자

- 재정적인 지급에 결정하고 관여하는 자
-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자(직원 채용 또는 해고)
- 수표 서명 권한 보유자
- 세금 신고서 준비자
- 사업 결정에 관한 권한 보유자
- 세금 관리자 또는 총괄 관리자
- 회사 중역

특정 상황 하에서, 사업체를 대리하는 의무를 지지 않더라도 책임자 사정서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세 및 사용세의 경우, 합명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일원이면 해당 합명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부가 책임자 사정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조세부가 책임자 사정서를 발부하고 해당 납세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또는 조세 이의 분과 심리를 청원함으로써 9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납세자에게 해당 사정서와 책임자로서 채무를 반박하기 위해 심리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세부는 원본 사정서와 함께 사정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에 한해, 납세자의 사업체가 동일한 세금 채무에 대해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조세 이의 심리를 청원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업체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려면 납세자는 직접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조세 이의 심리를 청원하여야 합니다.

책임자 사정이 최종 확정되면, 조세부는 납세자의 자산에 대해 이용 가능한 모든 징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사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관여하고 있더라도, 조세부는 사업체의 채무 전액을 책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 세금 채무는 파산 시 면책이 불가합니다.

유연 집행인 및 양수인의 유산세 채무

납세자가 유산의 집행인 또는 관리자로서 해당 유산의 수령인에게 자산을 배분하거나, 또는 뉴욕 유산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유산에 연관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미납 유산세에 대해 개인적인 채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산세가 전액 납부되거나 조세부가 유산세 선취특권의 해지를 승인할 때까지, 납세자는 계속 그 채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유산 수령인으로서 해당 유산에서 재산을 수령한 경우, 납세자가 수령한 재산의 가치만큼 미납 유산세에 대해 개인적인 채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및 생존 배우자가 공동으로 보유한 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탁 계좌

판매세 및 사용세 또는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체 납세자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직원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예치하기 위한 신탁 계좌 또는 분리 계좌를 개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탁 계좌는 세금 신고 기한에 맞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준비되도록 해 줍니다.

과거 상습적인 체납 관행이 있는 경우, 조세부는 납세자에게 신탁 계좌 개설을 요구할 것입니다.

권한 증명서의 취소 혹은 정지, 또는 권한 증명서의 발급 거부

조세부는 의도적인 미신고 또는 세금 미납과 같이 세법의 특정 요건을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판매세 및 사용세 징수 권한 증명서(Certificate of Authority)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권한 증명서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납세자는 뉴욕주 내에서 권한 증명서가 요구되는 일체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취소 또는 정지된 증명서로 사업체를 유지하거나 필수 증명서 없이 새 사업체를 시작하려고 할 경우, 조세부는 민형사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부는 이전의 세법 미준수에 대해 권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 증명서의 취소 또는 정지 절차를 시작하거나 권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조세부는 항의할 권리를 포함해 과정의 각 단계마다 납세자의 권리를 통지합니다. 납세자가 채무를 해결하는 등 상황이 보증하는 경우, 조세부는 이 과정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징수 활동 동안 대의권

납세자는 스스로를 대리하거나 본인을 대리할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 대리인은 납세자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적절한 서면 승인서(위임장)를 납세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제출 방법은 조세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조세부에 전화하십시오(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

면허 및 담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부나 다른 정부 기관은 납세자의 면허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에 대해 매입한 일체의 채권 또는 기타 담보를 현금화하여 납세자의 세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취소되면 납세자는 새 채권을 확보해야만 채권이 요구되는 사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또는 불만 제기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조세부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조세부에 불만 사항이 있으면, 조세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십시오(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

불만 사안에 따라, 조세부의 담당자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거나, 납세자의 불만 사항을 추가 심사에 회부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조세부 웹사이트 **www.tax.ny.gov**를 통해

-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고 세금을 관리하십시오
- 새 온라인 서비스와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전화 지원

개인 소득세 정보 센터:	518-457-5181
법인세 정보 센터:	518-485-6027
판매세 정보 센터:	518-485-2889
원천세 정보 센터:	518-485-6654
기타세 정보 센터:	518-457-5735
양식 및 간행물 주문:	518-457-5431
문자전화(TTY) 또는 TDD 장비 사용자	7-1-1을 눌러 뉴욕 중계 서비스에 연결